

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
**심사보고서**

의안 번호	110
----------	-----

2018년 9월 14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18. 8. 24.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3. 회부일자 : 2018. 8. 27.
4. 상 정 :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
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18. 9. 11.)
   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18. 9. 12.)
    - 질의 및 답변, 원안의결

## II. 제안설명 요지 (기획조정실장 강태웅)

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8년 서울

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우리시는 「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의거 지방채 상환 및 채무감축을 위해 감채기금을 운영하고 있고, 기금의 주요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의 50%,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임
-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조 4,314억원 발생하였고, 이 중 자치구 정산금,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정산금 1조 674억원을 제외한 1조 3,640억원의 50%인 6,820억원을 감채기금에 적립하게 되었음
- 적립금으로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을 위해 차입한 700억원을 중도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고, 나머지 6,120억원은 내년에 만기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예정임

## 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엄지운)

### 1. 주요내용

- 서울시 '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

682,003백만원을 감채기금에 적립하여

-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 부채 상환 등으로 활용하고자 '18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

〈표 3-1〉 감채기금의 수입·지출 계획변경(안)

(단위 : 백만원)

< 수입계획 >				< 지출계획 >				
항·목		당초계획	변경계획	증·감	세부사업	당초계획	변경계획	증·감
		(A)	(B)	(B-A)		(C)	(D)	(D-C)
합 계		183,161	864,762	681,601	합 계	183,161	864,762	681,601
전입금	순세계잉여금	-	682,003	682,003	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상환	75,466	75,466	-
	기타회계 전입금	4,166	4,166	-	지방채 차입금 원리금상환	7,320	77,320	70,000
이자 수입	공공예금 이자수입	185	185	-	기타회계 전출금	100,000	100,000	-
					기금관리비	50	50	-
예치금회수		178,810	178,408	△402	예치금	325	611,926	611,601

## 2. 검토의견

- 「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 제1항1)은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% 이상을 감채기금으로

1) 「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,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
  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
  - 나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
  - 다.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

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음

- '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조 4,313억 9,500만원으로<sup>2)</sup>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에 따라 ① 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, ②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, ③ 타 회계 전출 등 법정경비 등을 정산한 잉여금(1조 3,640억 600만원)이 발생하였음
  
- 법정경비 등을 정산한 잉여금의 50%에 해당하는 6,820억 300만원을 동 기금의 수입계획중 전입금(순세계잉여금)으로 증액편성하고, 예치금회수 수입은 일부 감액조정하여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당초보다 6,816억 100만원 증액 운용할 계획임
  
-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지출계획도 연동하여 6,816억 100만원 증액 운용할 계획인 바 예치금은 당초계획보다 6,116억 100만원 증액하고, 지방채차입금 원리금 상환도 700억원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임
  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3)에 따라 “정책사업”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
  
- 감채기금의 경우, **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**로 구성되어 일반적인 기

2)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결산서Ⅳ-1, (결산상 세입·세출 처리상황), p.24

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**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**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'15.7.24.개정, '16.1.1.시행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금의 정책사업과 차이가 있으나 지출계획중 **재무활동**의 지출액을 당초 계획액(1,831억 1,600만원) 대비 372.2%, 6,816억 100만원 증액된 8,647억 6,2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인 바, 대규모 재원의 기금 편입이라는 점에서 의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 요청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

〈표 3-2〉 감채기금 지출계획 변경(안)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				당초계획	수정계획	증 감 액	증 감 륜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 성 목	통 계 목	(A)	(B)	(C)=(B)-(A)	(C)/(A)
총계					183,160	864,761	681,601	-
재무활동 (소계)					183,110	864,711	681,601	372.2
재무활동	내부거래지출	재정투융자 기금 차입금상환	예수금 원리금 상환 <sup>주1)</sup>	예수금 원금상환	71,300	71,300	-	-
				예수금 이자상환	4,165	4,165	-	-
		기타회계 전출금	기타회계등 전출금	기타회계 전출금	100,000	100,000	-	-
		지방채 차입금 원리금상환	차입금이자 상환	지방채증권 이자상환	7,320	77,320	70,000	-
	보전지출	여유자금 예치	예치금	은행예치금	325	611,926	611,601	-
행정운영경비 (소계)					50	50	-	-
행정운영 경비	기본경비	기금관리비	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	50	50	-	-

주1) 지하철 건설채무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수한 원리금을 상환

※ 행정안전부 「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등에는 천원 단위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○ 다만,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이미 금년도 결산결과를 통하여 '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의 발생규모가 공개되었고, 「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4)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중 법정 정산금을 제외한 여유재원의 50%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음

- 따라서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앞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와 의회에 동 안건을 제출하는 일련의 절차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불구하고, 지난 8월 21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물론 동 안건도 8월 24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

-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5)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안제출 기한에 예외를 두고 있으나 '17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잉여재원을 예치금에 편성하는 동 안건이 긴급성이 요구되는 안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금 운용부서가 조례와 규칙이 정하고 있는 내용에 주의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됨

---

4) 「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,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  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 
나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
다.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

5)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

①~② 생략

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 IV. 심사결과 : 원안의결(2018.9.12.)

### 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### 2.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#### 1) 소위원회 구성

- 일 자 : 2018. 9. 12(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)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(의회별관 2층)
- 위원구성 :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소위원회(9명)
  - 위 원 장 : 김광수(환수)
  - 부위원장 : 우형찬(교통), 장상기(교육)
  - 위 원 : 김용연(보건복지), 김인호(문화체육관광), 김정태(기획경제), 김호평(행정자치), 이상훈(도시계획), 정진술(도시안전),

#### 2)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

##### 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9. 12(수) 14:00 ~ 21:5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(의회별관 2층)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

◇ 첨부 :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. 끝.



#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1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2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8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서울시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682,003백만원을 추경을 통해 감채기금에 적립할 예정으로,

나.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 부채 상환 등으로 활용하고자 '18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<수입 및 지출 내역>

<단위 : 백만원>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	
구분	변경전(A)	변경후(B)	증감(B-A)	구분	변경전(A)	변경후(B)	증감(B-A)	
합계	183,161	864,762	681,601	합계	183,161	864,762	681,601	
전입금	순세계잉여금	-	<b>682,003</b>	<b>682,003</b>	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상환	75,466	75,466	-
	기타회계 전입금	4,166	4,166	-	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	<b>7,320</b>	<b>77,320</b>	<b>70,000</b>
이자 수입	공공예금 이자수입	185	185	-	기타회계 전출금	100,000	100,000	-
					기금관리비	50	50	-
예치금회수	178,810	178,408	<b>△402</b>	예치금	<b>325</b>	<b>611,926</b>	<b>611,601</b>	

○ 수입 변경 : 총 6,816억원 증가

- 전입금 6,820억원 증가 : (당초) 42억원 → (변경) 6,862억원

- 예치금회수 4억원 감소 : (당초) 1,788억원 → (변경) 1,784억원

※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

○ 지출 변경 : 총 6,816억원 증가

-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 700억원 증가 : (당초) 73억원 → (변경) 773억

※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 지하철 9호선 3단계 및 신림선 경전철 건설 목적으로 '16.12월 700억원 금융차입

- 예치금 6,116억원 증가 : (당초) 3억원 → (변경) 6,119억원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

※ 작성자 : 재정관리담당관 재정총괄팀 김정학 (☎ 2133-6865)